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5. 18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11일
- 나. 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5 명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5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범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.  
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시행계획 수립과 공공기관과의 협력지원 사항 및 교육홍보를 규정함.  
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.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
#### ○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
-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
-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시행계획 수립과 공공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육 홍보에 대한 사항
-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
#### ○ 본 조례안은

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구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(김용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7년 월 일

발 의 자 : 김용범 의원 외 5 명

## 1. 제안이유

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 
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 
등을 규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

(안 제3조, 안 제4조)

다. 시행계획수립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지원 및 홍보·교육을 규정함

(안 제5조, 안 제6조)

라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

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함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피해자”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”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,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,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.

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구민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,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시행계획 수립)**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2.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영등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홍보 및 교육)**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·보급에 힘쓰며,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재정지원 등)**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비밀준수의 의무)**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,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